

제 11 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기업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상용 방문자, 또는
- 나. 기업 내 전근자

제 11.2 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에 따라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11.3 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 11.2 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1.4 조 일시 입국의 허용¹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의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따라, 이 장에 따라 달리 입국 자격을 갖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 및 11-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포함한 양허를 규정한다. 이러한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포함된 기업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요건과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명시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다음을 조건으로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¹ 이 장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기재된 조건, 유보 또는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허용 당사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4.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그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자연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6.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입국 조건으로서 노동시장테스트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어떠한 수량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 11.5 조 정보의 제공

각 당사국은,

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관련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내에, 설명 자료, 관련 양식과 문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을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출입국 관련 웹사이트 등에 공표한다.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공표된 정보가 그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하는 날

까지 갱신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제 11.6 조 신속한 신청 절차

1.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제출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 또는 이에 대한 연장을 국내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승인되는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통보를 제공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3.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완전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1.7 조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제 11.6 조에 기술된 대로 정보를 교환하는 접촉선을 설치한다.
2. 접촉선은

가. 한국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 또는 그 승계인

나. 이스라엘의 경우,

내무부 인구이민국 지역 국경출입국관리국 사무소 관리자 또는 그 승계인

제 11.8 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 또는 분쟁을 양 당사국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출입국 절차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 20 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를 완료하였을 경우

3.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1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자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제 2 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당사국의 자연인이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거주 또는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증,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에 관한 제 20 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제 11.9 조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 후 첫 해 안에,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결정된 경우 직접 대면 또는 이용 가능한 그 밖의 기술 수단을 통하여 회합한다.
3. 작업반은

- 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더 많은 범주의 기업인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고 권고한다.
- 나.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그리고
-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그 밖의 상호 관심사를 고려한다.

제 11.10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제 1 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 19 장(협정의 운영), 제 11.8 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 20 장(분쟁해결), 제 21 장(예외) 및 제 22 장(최종규정), 그리고 제 16 장(투명성)의 제 16.1 조(공표), 제 16.2 조(통보 및 정보의 제공) 및 제 16.3 조(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 11.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거주 또는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11-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려는 이스라엘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상용 방문자

3. 이스라엘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9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4. **이스라엘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의 이스라엘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

-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연인
- 2) 상품의 판매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는 자연인, 또는
-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6항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는 자연인,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 영업소 및 실제 이 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연인

이스라엘의 기업 내 전근자

5. 이스라엘의 기업 내 전근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6. **기업 내 전근자**란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한 조직으로 한국 영역에 설립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법인, 투자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하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을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리고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그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용과 관련된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이나 투자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해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부속서 11-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1. 다음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제 11.4 조에 따른 이스라엘의 약속을 규정한다.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

2. 이스라엘은 노동시장테스트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가. **임원**: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폭넓은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인

나. **관리자**: 조직 또는 그 조직 내 부서를 지휘하고, 인사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그러한 인사 채용 및 해고 그리고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감독 및 통제하고 보유함으로써 그 조직의 서비스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는 인²

3. **기업 내 전문가**: 취업 허가는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 또는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달리 필수적이거나 재산권적인 지식을 보유한 기업 내 전문가에게 노동시장테스트를 준수하여 발급될 것이다.

4.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입국 및 일시 체류는 63 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5. 국경출입국관리국의 재량에 따르고 모든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후

가.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를 위한 고용 허가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초에 2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다.

² 이 항에서, “서비스 공급 기능”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수행된 투자 운용을 포함한다.

나. 최초 고용 허가의 발급 후 그리고 고용인에 의한 관련 연간 수수료의 지불을 조건으로, 주 한국 이스라엘 영사관에 의하여 발급된 B/1 비자와 취업 허가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이스라엘 입국 후, 고용 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최초 기간 동안, 그리고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 고용 허가의 연장들은 2년까지의 기간들 동안, 이스라엘 법에 규정된 최대까지 요청될 수 있다. B/1 비자와 취업 허가의 추가 연장들은 1년까지의 기간들 동안 발급될 수 있다.

한국의 상용 방문자

6. 한국의 상용 방문자란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 서비스 공급 또는 이스라엘에서의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사업 협상 및 회의에 대한 참여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시 입국하려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7. 한국의 상용 방문자의 체류 기간은 국경통제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입국 및 일시 체류는 1년에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